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 김석기 • 구자근 • 인요한

최형두 · 엄태영 · 서천호

이철규 · 김장겸 · 박성민
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조사 시 전문가가 비행요인을 진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참여제도와 개별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, 조사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

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, 제49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"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"을 "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,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"으로 한 다.

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4(전문가의 의견 조회)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, 심리학자, 사회사업가, 교육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,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전문가의 진단) 소년부는	제12조(전문가의 진단)
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	
신건강의학과의사 · 심리학자 ·	
사회사업가・교육자나 그 밖의	
전문가의 진단, <u>소년 분류심사</u>	<u>경찰관서의 조</u>
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, 보	사결과와 의견, 소년 분류심사
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	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,
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제49조의4(전문가의 의견 조회)
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
	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
	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
	사, 심리학자, 사회사업가, 교육
	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
	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, 심리
	상태 등에 대한 진단 소견이나
	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